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157호의14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○○○공소청

제 0000-0000 호 0000. 00. 00.

수 신 : ○○○(기관명)

제 목 : **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신청 기각**

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기간연장[]·종류변경[]·취소[] 신청이 있는바,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합니다.

행 위 자	성명 ()
	주민등록번호 (세)
	직업
	주거
변 호 인	
잠 정 조 치 결 정 서 번 호	
잠 정 조 치 종 류	[] 1.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[] 2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이나 그 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[] 3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[] 4.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[] 5.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
잠 정 조 치 기 간	
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등이 필요한 이유	별지 신청서의 내용과 같음
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	

○○○ 공소청

검 사 ㊞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